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80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 박정하·신동욱·신성범

김정재 · 서범수 · 이인선

김종양 · 엄태영 · 유영하

최은석 · 이종욱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 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비비용은 6298만원이며 그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을 "제1항·제4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⑧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혼인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1천만원을 공제 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제52조제8항"을 "제52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인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⑦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
	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
	득금액(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한
	다)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다.
<u>⑧</u>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u>⑨</u>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	<u> 8항</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	
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	
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	
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u>⑨</u>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u>⑩</u>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	<u> </u>
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	항 및 제9항
공제"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	9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	
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
제6항, <u>제52조제8항</u> 및 「조	<u>제52조제9항</u>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	
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①·① (생 략)	①·① (현행과 같음)